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“3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보증,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각각 5억원”을 “보증은 10억원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”를 “행위에”로, “조합”을 “재건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“조합”을 “재건축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신용보증의 한도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p> <p>1.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: 보증 종류별 각 <u>3억원</u>. 다만, 제3조제4호에 따른 <u>보증,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각각 5억원으로 한다.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28조의2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28조(신용보증의 한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5억원</u>. ----- ----- <u>보증은 10억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의2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제외한다.

가.·나. (생략)

3.·4. (생략)

5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(신탁 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제외한다. 이하 이호에서 같다)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. 다만,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.

6.·7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---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3.·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.

----- 재건

출 -----

-----.

6.·7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